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84
------	------

2017. 11. 2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30일, 이윤희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29)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이윤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임원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구성 시 특정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 임원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한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도록 함(안 제8조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구성시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사과정의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원 구성 현황과 관련 규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단 정관에서 규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자·출연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제9조) 임직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며(제12조) 이사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임명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과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이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

-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으로 이사장 1인, 2인 이내의 상임이사,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감사 1인을 두며 비상임이사 중 1인은 근로자이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 재단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임원은 현재 2인의 상임이사과 5인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임원 명단은 붙임자료 2 참조)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재단의 임원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구성시에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이상 초과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양성평등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양성평등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여하고(제20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제21조)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제21조 제2항)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적극적 조치(제14조), 시정참여 확대(제15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

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편,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의 위원회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포함되지 않아 법령의 위임없이 재단의 임원 구성시에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후단은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본 개정안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재단의 임원 구성시에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재단의 경우 이사 중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등 현실적으로 양성평등과 다소 거리가 있는 임원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4
----------	------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이윤희, 한명희, 김진철,
유 용, 김제리, 송재형,
김영한, 이신혜, 이순자,
문형주, 장우윤, 박호근,
김혜련, 조규영, 우미경,
김경자(양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임원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구성 시 특정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원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한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함. (안 제8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이내,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이사로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